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9일, 김문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4. 11. 20.)

상정, 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5. 8. 20.)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5. 11. 19.)

상정, 축조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2.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문수의원)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도서·벽지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증 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 결과 서울시의 경우 39.7점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56.7점으로 도농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전라남도 내의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37.3%)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4년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 이에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23년 모집정원 20명, 지원자는 10명에 그치는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시·도별로 하나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전부개정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 또는 설치하고, 학비등을 지원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완화하려는 등의 취지를 지닌 것으로 보임.

다만 과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이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영향으로 의료계 반발 및 의료 공백 우려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개정에 따라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가 폐지된다는 점, 기존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지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